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포함 명시〉
■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903호)

2026. 3.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관계부처 의견	3
3.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1.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9
2. 공공외교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2. 발의일자 : 2025년 12월 4일
3. 회부일자 : 2025년 12월 5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동법 제4조제3항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책무를 이행하고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u>주요 정책</u> 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 행) 2. 공공외교를 위한 <u>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u> 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7. (현 행)

1) 「공공외교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부처 의견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2025년 11월 수립된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²⁾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공공외교 활동 지원”, “민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같은 해 11월 향후 5개년 계획이 수립된바, 개정안 부칙에서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검토의견

가.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포함 명시

현행 「공공외교법」은 제2조³⁾에서 공공외교의 개념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책무

2) 참고자료 1 참조

3)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로서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8조4)는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민·관 협력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9조5) 및 제12조6)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과 추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민·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은 현행 법령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공공외교 운영 실태를 보면, 외교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있음.

4) 「공공외교법」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공공외교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공외교법」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지정되어 있음.)

또한 공공외교위원회에 지자체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협업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교부는 매년 지자체의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에도 ‘지자체 공공외교 활동 지원’, ‘민간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등 협력체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주요 추진과제>

목표 및 과제		소관부처(기관)
목표 3.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중점과제 3-3 지자체·재외동포 참여 확대		
3-3-1	지자체 공공외교 활동 지원	전 부처, 지자체
3-3-2	재외동포 역량 활용 공공외교 사업 추진	외교부, 재외동포청
3-3-3	민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전 부처, 지자체

이처럼 공공외교는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제4조제3항의 국가 책무를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법체계의 정합성 및 정책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부칙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외교부장관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장래의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시행중인 기본계획에도 개정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공공외교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설정하는 성격을 가짐.

일반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5년, 10년, 20년 등 중장기적 시계에서 수립되는 계획⁷⁾으로서, 수립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소요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경과⁸⁾를 보면, 제1차 및 제2차 계획 수립 시 약 1년의 수립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각각 약 9,500만원 및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투입되었음. 제3차 기본계획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수립 필요성에 따라 연구용역 대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수립되었음.

기본계획은 동법 제8조⁹⁾에 따라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나, 그간 위원회 결정으로 내용을 변경한 사례는 2018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한 1건¹⁰⁾에 그치고 있음. 이는 실제 운용에 있어 계획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에서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최근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의 체계와 추진 일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최근 기본계획 제도를 정비한 다른 입법례¹¹⁾를 보면, 개정 규정을 현행 계획에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

8)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제1차(2017~2021), 제2차(2023~2027), 제3차(2026~2030)로 수립되었음. 제1차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 및 디지털 공공외교의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이 2022년 중 수립되었음. 다만, 2025년 9월 신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은 조기 종료되고 제3차 기본계획(2026~2030)이 새로 수립되었음.

9) 「공공외교법」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우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방안 추가, 관련 중점 추진 과제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가 내용이었음.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홍기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외교통일위원회 대안) 부칙 제2조는 “제6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최초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바 있음.

따라서 개정 취지를 현행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거나, 개정안 부칙에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신설하여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고자료 1]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목차’ 및 ‘세부추진과제’만 표시

목 차

I. 수립 환경	1
II.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개선 사항	4
III. 제3차 기본계획(안)	7
1. 기본 방향	7
2. 세부 과제	8
[목표1] K-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증진	8
① K-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확산	8
②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11
③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13
④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한국 정책 이해 제고 ...	15
[목표2]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17
① 한국 경험의 공유 및 글로벌 도전 대응 주도	17
② 국가별·지역별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 강화	18
③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19
[목표3]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21
①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체제 정비	21
② 국민 공공외교를 통한 국민 역량의 외교 자산화	22
③ 지자체·재외동포 참여 확대	23
IV. 제3차 공공외교 자원 조달 및 배분 계획	25

세부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목표 및 과제		소관부처(기관)
목표 1. K-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증진		
중점과제 1-1 K-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확산		
1-1-① K-컬처·K-콘텐츠 등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외교 확대		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1-1-② K-푸드 해외 홍보 및 확산 기반 지원		외교부, 문체부, 농림부, 지자체
1-1-③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		외교부, 문체부, 국방부, 지자체
1-1-④ 한국 관광 인지도 제고 및 관광 교류 강화		외교부, 문체부, 지자체
중점과제 1-2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1-2-① 우리 산업·기술 인지도 제고 및 융복합 공공외교 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교부, 문체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1-2-② 국내외 산업 및 과학기술계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중점과제 1-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1-3-① 해외 한국학의 단계별 맞춤 지원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1-3-②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1-3-③ 한국 관련 올바른 이해 제고 및 허위·왜곡 정보 대응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1-3-④ 재한 외국인 대상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노동부, 법무부, 지자체
중점과제 1-4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한국 정책 이해 제고		
1-4-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전부처, 지자체
1-4-② 국내 디지털 신기술 기업 협업 콘텐츠 제작		전부처, 지자체
1-4-③ 국민 참여형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전부처, 지자체

목표 및 과제		소관부처(기관)
목표 2.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중점과제 2-1 한국 경험의 공유 및 글로벌 도전 대응 주도		
2-1-①	한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경험 공유	전부처
2-1-②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주도 및 역할 확대	전부처, 지자체
2-1-③	6·25 참전용사 및 후손들 대상 보훈외교 확대	외교부, 국방부, 보훈부
중점과제 2-2 국가별·지역별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 강화		
2-2-①	주요국 대상 정책 공공외교 확대	전부처, 지자체
2-2-②	G7 국가 대상 공공외교 강화	전부처, 지자체
2-2-③	글로벌 사우스와의 정책 소통 강화	전부처, 지자체
2-2-④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책 이해 제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2-2-⑤	경제안보 정책 관련 우리 입장 다각적 전파 및 이해 제고	외교부·산업부
중점과제 2-3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2-3-①	차세대 대상 교류사업 등 공공외교 강화	전부처, 지자체
2-3-②	주요 인사 초청 및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전부처, 지자체
목표 3.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중점과제 3-1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체제 정비		
3-1-①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전부처, 지자체
3-1-②	재외공관 중심의 해외 주재 유관기관 협업 강화	전부처, 지자체
3-1-③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전략 및 정보 공유	전부처, 지자체
중점과제 3-2 국민 공공외교를 통한 국민 역량의 외교 자산화		
3-2-①	우리 청년의 해외 파견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3-2-②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	외교부, 지자체
3-2-③	우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노력 지속	전부처, 지자체

목표 및 과제		소관부처(기관)
중점과제 3-3 지자체·재외동포 참여 확대		
	3-3-① 지자체 공공외교 활동 지원	전부처, 지자체
	3-3-② 재외동포 역량 활용 공공외교 사업 추진	외교부, 재외동포청
	3-3-③ 민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전부처, 지자체

[참고자료 2] 공공외교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 최근 3년간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연도	회의날짜	회의 안건	참석 지자체 읍저버
2023	2023.12.27.	○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심의 ○ 2023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 토의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2024	2024.12.20.	○ 2025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심의 ○ 2024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	-
2025	2025.11.13. (서면회의)	○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종료 심의 ○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2025.12.23.	○ 2026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심의 ○ 2025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 ○ 공공외교 분야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원특례시

* 외교부는 매년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 시 광역지자체 대상 읍저버 참석을 요청하고 있음.

○ 공공외교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 구분	인원수 (명)	구성 기준	비고
당연직	9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공공외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공외교위원회는 위원장(외교부장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명직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민간	5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 또는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